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7일, 김상욱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19.)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상욱의원)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75)를 감면함. 반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의 감면율을 적용함. 그런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입주기업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및 제8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실무에서는 본인이 입주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를 ‘실수요산단’으로 부르고 있음.

실수요산단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산업단지 732개 중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243개이고, 이 중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53.8km²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100%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166개, 50% 이상 100% 미만을 사용하는 곳은 26개, 30% 이상 50% 미만을 사용하는 곳은 51개임.

실수요산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의 30% 이상을 분양받은 산업단지에서 사업시행자가 분양받는 면적은 전체 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약 10%(면적기준)에 해당하여 그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요산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지방세 감면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의 지방세 감면율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두 유형의 입주기관 간에 형평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